

의안번호	2203254
의 퇴 인	임오경 의원
회 답 일	2024. 11. 18.
추계번호	24A316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알림설비(화재경보기 및 LED비상조명)와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435억 6,600만원(연평균 287억 1,3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설치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29,746	28,174	28,737	29,312	27,598	143,566	28,713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항 및 제2항 ¹⁾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²⁾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³⁾을 기 실시 중임
 - 2024년 예산은 초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직접설치 제외) 2,175억원, 화재예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800억원,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740억원 등 총 4,365억원 편성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3)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

- 개정안에 따라 본 법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가 추가로 마련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지원 수준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기존 지원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⁴⁾ 추가 설치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안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알림설비와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로 가정하며, 이외의 다른 시설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 － 화재알림설비의 경우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 및 LED비상조명 알람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화재알림설비와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는 신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 대상 시설별로 추계기간 동안 1회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 부칙에서 기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2025년 이후 신규 설치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만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1조의2제6항 후단의 규정⁵⁾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 외에 민간(한국전력 포함)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4) 안 제8조의2제2항은 지원 대상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원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비율 적용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 설치가 필요한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므로 이외의 다른 충전시설(수소충전소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이하 같음

5)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⑥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알람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부담을 구분하지 않고 소요 비용을 총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⁶⁾를 적용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추계연도에 신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에 충전시설당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설치 단가를 곱하여 추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는 해당 연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물량 추정치에 각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비중을 곱하여 추계
 - 연도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물량은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를 바탕으로 추정하며, 설치 목표가 공개된 2023년, 2025년, 2027년 및 2030년을 기준으로 그 외의 연도(2024년, 2026년, 2028~2029년)는 선형보간법을 활용하여 추정
 -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 6. 29.)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5년 59만기, 2027년 85만기, 2030년 123만기가 보급될 계획

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 11.)

(단위: %)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추정: 2023~2030년

(단위: 만기)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적	추정	계획	추정	계획	추정	추정	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1	45	59	72	85	98	110	12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및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 6. 2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각 설치·운영주체가 신규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른 2024년 7월 누적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5%, 민간(한국전력 포함) 97.5%

[표 3]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2024년 7월말 기준)

(단위: 기, %)

운영주체		규모	비중
	국가(환경부)	8,422	2.3
	지방자치단체	1,068	0.3
소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490	2.5
	한국전력	10,916	2.9
	민간 등 기타	353,555	94.5
소계(민간)		364,471	97.5
합 계		373,961	100.0

주: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등록 기준
 2.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환경부

- 이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신규 설치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2025년 14만기, 2029년 12만기 등으로 추정되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의 신규 설치분은 2025년 3,553기 및 2029년 3,045기, 민간(한국전력 포함)이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의 신규 설치분은 2025년 13만 6,447기 및 2029년 11만 6,955기 등으로 추계

[표 4] 운영주체별 신규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추계: 2025~2029년

(단위: 기)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신규 설치 충전시설 수	140,000	130,000	130,000	130,000	120,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553	3,299	3,299	3,299	3,045
민간 ¹⁾	136,447	126,701	126,701	126,701	116,955

주: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한국전력 포함)이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각 소방시설의 단가는 2023년 기준 화재알림설비의 경우 13만 2,000원,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의 경우 26만 4,000원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검색 결과, 2023년 기준 화재알림설비 단가는 132,000원⁷⁾,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단가는 264,000원⁸⁾으로 추정

[표 5]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단가 추계: 2025~2029년

(단위: 천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화재알림설비 설치 단가	138	141	144	147	150
소화기 설치 단가	276	282	287	293	2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된 대상 시설 수에 단가를 곱하고 민간 설치 시설의 경우 보조율(50%)을 추가로 적용하면, 신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를 두는 경우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435억 6,600만원(연평균 287억 1,300만원)으로 추계
 - 소방시설 유형별로 보면,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화재알림설비 설치에 총 478억 5,500만원, 소화기 설치에 총 957억 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설치·운영 주체별로 보면,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20230901507-00, '2023년 안전취약계층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구매')에 따르면 화재알림설비(비상라이트: 화재경보기/LED비상조명등) 4,510개 구입에 595,320,000원이 입찰금액임

8)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202304116267-00,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 소화기 구매')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31개 구입에 8,184,000원이 입찰금액임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총 71억 600만원,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총 1,364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소방시설 설치 비용(합계)		29,746	28,174	28,737	29,312	27,598	143,566	28,713
소방시설 유형별	화재알림설비	9,915	9,391	9,579	9,771	9,199	47,855	9,571
	소화기	19,831	18,782	19,158	19,541	18,399	95,711	19,142
설치·운영 주체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472	1,395	1,422	1,451	1,366	7,106	1,421
	민간 ¹⁾	28,273	26,779	27,315	27,861	26,232	136,460	27,292

주: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한국전력 포함)이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을 말함

1.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6.29.)의 충전시설 확충 계획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충전시설 보급 실적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별로 설치 필요한 소방시설의 종류와 개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소방시설 설치 실적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추계기간 동안 민간이 신규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체에 대하여 50%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지원 범위 및 보조율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